미사강변도시 A23블럭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5.02.27)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 2, 3순위' 방식을 → '1, 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수도권 1순위 발생 요건 기존 '2년, 24회 납입' → '1년, 납입횟수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으로 변경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 이하 +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5.02.2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07.16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2순위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1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6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7.16)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1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로 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하남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해당지구는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가 신청가능하나, 2014.07.16 이전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하남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5.08.04)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5년간, 전용면적 85㎡ 초과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만 해당)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단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 ·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www.thesharp.co.kr/salessite/misa)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96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 주택과 – 16968호(2015.07.16)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하남미사지구 내 A23BL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 지상29층 5개동 총 487세대 [일반 특별공급 (기관추천) 25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5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면적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타입	세대별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1층우선 배정세대
				세대별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합계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민영주택	2015000840-01	73.0250A	73A	73.025	23.117	96.142	38.998	135.140	46.038	48	5	5	5	1	32	1
	2015000840-02	73.0750B	73B	73.075	23.629	96.704	39.025	135.729	46.069	25	2	2	2	1	18	1
	2015000840-03	84.0380A	84A	84.038	26.373	110.411	44.880	155.291	52.981	128	12	11	12	4	89	1
	2015000840-04	84.1050B	84B	84.105	26.430	110.535	44.916	155.451	53.023	58	6	6	6	2	38	2
	2015000840-05	93.1820A	93A	93.182	29.139	122.321	49.763	172.084	58.745	56	–	6	–	2	48	2
	2015000840-06	93.0610B	93B	93.061	29.332	122.393	49.698	172.091	58.669	58	–	6	–	2	50	2
	2015000840-07	93.3620C	93C	93.362	29.102	122.464	49.859	172.323	58.859	58	–	6	–	1	51	2
	2015000840-08	101.8190	101	101.819	30.587	132.406	54.376	186.782	64.191	56	–	6	–	1	49	2
	합계									487	25	48	25	14	375	13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면적–㎡, 세대, 원)

주택형	동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 양 금 액			계 약 금		중 도 금(55%)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0%	5%	1회(5%)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계약후 1개월내	2015.11.2	2016.3.2	2016.7.4	2016.12.1	2017.3.2	2017.7.3	입주지정일
73A	2305	1,3	1층	1	218,162,068	156,847,933	375,010,000	37,501,000	18,750,500	18,750,500	37,501,000	37,501,000	37,501,000	37,501,000	37,501,000	112,503,000
			2층	1	222,891,695	160,248,305	383,140,000	38,314,000	19,157,000	19,157,000	38,314,000	38,314,000	38,314,000	38,314,000	38,314,000	114,942,000
			3~4층	4	227,615,505	163,644,495	391,260,000	39,126,000	19,563,000	19,563,000	39,126,000	39,126,000	39,126,000	39,126,000	39,126,000	117,378,000
			5~7층	6	232,345,133	167,044,868	399,390,000	39,939,000	19,969,500	19,969,500	39,939,000	39,939,000	39,939,000	39,939,000	39,939,000	119,817,000
			8~14층	14	235,887,990	169,592,010	405,480,000	40,548,000	20,274,000	20,274,000	40,548,000	40,548,000	40,548,000	40,548,000	40,548,000	121,644,000
			15층이상	22	239,430,848	172,139,153	411,570,000	41,157,000	20,578,500	20,578,500	41,157,000	41,157,000	41,157,000	41,157,000	41,157,000	123,471,000
73B	2305	2	1층	1	217,754,843	156,555,158	374,310,000	37,431,000	18,715,500	18,715,500	37,431,000	37,431,000	37,431,000	37,431,000	37,431,000	112,293,000
			2층	1	222,472,835	159,947,165	382,420,000	38,242,000	19,121,000	19,121,000	38,242,000	38,242,000	38,242,000	38,242,000	38,242,000	114,726,000
			3~4층	2	227,190,828	163,339,173	390,530,000	39,053,000	19,526,500	19,526,500	39,053,000	39,053,000	39,053,000	39,053,000	39,053,000	117,159,000
			5~7층	3	231,908,820	166,731,180	398,640,000	39,864,000	19,932,000	19,932,000	39,864,000	39,864,000	39,864,000	39,864,000	39,864,000	119,592,000
			8~14층	7	235,445,860	169,274,140	404,720,000	40,472,000	20,236,000	20,236,000	40,472,000	40,472,000	40,472,000	40,472,000	40,472,000	121,416,000
			15층이상	11	238,982,900	171,817,100	410,800,000	41,080,000	20,540,000	20,540,000	41,080,000	41,080,000	41,080,000	41,080,000	41,080,000	123,240,000
84A	2304	1,2	1층	1	246,243,140	177,036,860	423,280,000	42,328,000	21,164,000	21,164,000	42,328,000	42,328,000	42,328,000	42,328,000	42,328,000	126,984,000
			2층	1	251,583,605	180,876,395	432,460,000	43,246,000	21,623,000	21,623,000	43,246,000	43,246,000	43,246,000	43,246,000	43,246,000	129,738,000
			3~4층	4	256,918,253	184,711,748	441,630,000	44,163,000	22,081,500	22,081,500	44,163,000	44,163,000	44,163,000	44,163,000	44,163,000	132,489,000
			5~7층	6	262,252,900	188,547,100	450,800,000	45,080,000	22,540,000	22,540,000	45,080,000	45,080,000	45,080,000	45,080,000	45,080,000	135,240,000
			8~14층	14	266,255,340	191,424,660	457,680,000	45,768,000	22,884,000	22,884,000	45,768,000	45,768,000	45,768,000	45,768,000	45,768,000	137,304,000
			15층이상	24	270,251,963	194,298,038	464,550,000	46,455,000	23,227,500	23,227,500	46,455,000	46,455,000	46,455,000	46,455,000	46,455,000	139,365,000
	2304, 2302	4	3~4층	6	256,144,525	184,155,475	440,300,000	44,030,000	22,015,000	22,015,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132,090,000
	2301	3	5~7층	9	261,461,720	187,978,280	449,440,000	44,944,000	22,472,000	22,472,000	44,944,000	44,944,000	44,944,000	44,944,000	44,944,000	134,832,000
			8~14층	21	265,452,525	190,847,475	456,300,000	45,630,000	22,815,000	22,815,000	45,630,000	45,630,000	45,630,000	45,630,000	45,630,000	136,890,000
			15층이상	42	269,437,513	193,712,488	463,150,000	46,315,000	23,157,500	23,157,500	46,315,000	46,315,000	46,315,000	46,315,000	46,315,000	138,945,000
84B	2304	3	1층	2	245,387,968	176,422,033	421,810,000	42,181,000	21,090,500	21,090,500	42,181,000	42,181,000	42,181,000	42,181,000	42,181,000	126,543,000
			2층	2	250,705,163	180,244,838	430,950,000	43,095,000	21,547,500	21,547,500	43,095,000	43,095,000	43,095,000	43,095,000	43,095,000	129,285,000
			3~4층	4	256,022,358	184,067,643	440,090,000	44,009,000	22,004,500	22,004,500	44,009,000	44,009,000	44,009,000	44,009,000	44,009,000	132,027,000
	2301	2	5~7층	6	261,339,553	187,890,448	449,230,000	44,923,000	22,461,500	22,461,500	44,923,000	44,923,000	44,923,000	44,923,000	44,923,000	134,769,000
			8~14층	14	265,324,540	190,755,460	456,080,000	45,608,000	22,804,000	22,804,000	45,608,000	45,608,000	45,608,000	45,608,000	45,608,000	136,824,000
			15층이상	30	269,309,528	193,620,473	462,930,000	46,293,000	23,146,500	23,146,500	46,293,000	46,293,000	46,293,000	46,293,000	46,293,000	138,879,000
93A	2303	2	1층	2	258,916,594	204,763,406	463,680,000	46,368,000	23,184,000	23,184,000	46,368,000	46,368,000	46,368,000	46,368,000	46,368,000	139,104,000
			2층	2	264,528,463	209,201,537	473,730,000	47,373,000	23,686,500	23,686,500	47,373,000	47,373,000	47,373,000	47,373,000	47,373,000	142,119,000
			3~4층	4	270,134,749	213,635,251	483,770,000	48,377,000	24,188,500	24,188,500	48,377,000	48,377,000	48,377,000	48,377,000	48,377,000	145,131,000
	2302		5~7층	6	275,746,619	218,073,381	493,820,000	49,382,000	24,691,000	24,691,000	49,382,000	49,382,000	49,382,000	49,382,000	49,382,000	148,146,000
			8~14층	14	279,956,917	221,403,083	501,360,000	50,136,000	25,068,000	25,068,000	50,136,000	50,136,000	50,136,000	50,136,000	50,136,000	150,408,000
			15층이상	28	284,161,632	224,728,368	508,890,000	50,889,000	25,444,500	25,444,500	50,889,000	50,889,000	50,889,000	50,889,000	50,889,000	152,667,000
93B	2303	3	1층	2	258,447,542	204,392,458	462,840,000	46,284,000	23,142,000	23,142,000	46,284,000	46,284,000	46,284,000	46,284,000	46,284,000	138,852,000
			2층	2	264,042,660	208,817,340	472,860,000	47,286,000	23,643,000	23,643,000	47,286,000	47,286,000	47,286,000	47,286,000	47,286,000	141,858,000
			3~4층	4	269,643,362	213,246,638	482,890,000	48,289,000	24,144,500	24,144,500	48,289,000	48,289,000	48,289,000	48,289,000	48,289,000	144,867,000
	2302		5~7층	6	275,244,063	217,675,937	492,920,000	49,292,000	24,646,000	24,646,000	49,292,000	49,292,000	49,292,000	49,292,000	49,292,000	147,876,000
			8~14층	14	279,443,194	220,996,806	500,440,000	50,044,000	25,022,000	25,022,000	50,044,000	50,044,000	50,044,000	50,044,000	50,044,000	150,132,000
			15층이상	30	283,642,324	224,317,676	507,960,000	50,796,000	25,398,000	25,398,000	50,796,000	50,796,000	50,796,000	50,796,000	50,796,000	152,388,000
93C	2301	1	1층	1	258,079,001	204,100,999	462,180,000	46,218,000	23,109,000	23,109,000	46,218,000	46,218,000	46,218,000	46,218,000	46,218,000	138,654,000
			2층	1	263,668,535	208,521,465	472,190,000	47,219,000	23,609,500	23,609,500	47,219,000	47,219,000	47,219,000	47,219,000	47,219,000	141,657,000
			3~4층	2	269,263,653	212,946,347	482,210,000	48,221,000	24,110,500	24,110,500	48,221,000	48,221,000	48,221,000	48,221,000	48,221,000	144,663,000
			5~7층	3	274,853,187	217,366,813	492,220,000	49,222,000	24,611,000	24,611,000	49,222,000	49,222,000	49,222,000	49,222,000	49,222,000	147,666,000
			8~14층	7	279,046,733	220,683,267	499,730,000	49,973,000	24,986,500	24,986,500	49,973,000	49,973,000	49,973,000	49,973,000	49,973,000	149,919,000
			15층이상	15	283,240,280	223,999,720	507,240,000	50,724,000	25,362,000	25,362,000	50,724,000	50,724,000	50,724,000	50,724,000	50,724,000	152,172,000
	2303	4	1층	1	257,481,518	203,628,482	461,110,000	46,111,000	23,055,500	23,055,500	46,111,000	46,111,000	46,111,000	46,111,000	46,111,000	138,333,000
			2층	1	263,059,885	208,040,116	471,100,000	47,110,000	23,555,000	23,555,000	47,110,000	47,110,000	47,110,000	47,110,000	47,110,000	141,330,000
			3~4층	2	268,638,251	212,451,749	481,090,000	48,109,000	24,054,500	24,054,500	48,109,000	48,109,000	48,109,000	48,109,000	48,109,000	144,327,000
			5~7층	3	274,216,617	216,863,383	491,080,000	49,108,000	24,554,000	24,554,000	49,108,000	49,108,000	49,108,000	49,108,000	49,108,000	147,324,000
			8~14층	7	278,404,579	220,175,421	498,580,000	49,858,000	24,929,000	24,929,000	49,858,000	49,858,000	49,858,000	49,858,000	49,858,000	149,574,000
			15층이상	15	282,586,958	223,483,042	506,070,000	50,607,000	25,303,500	25,303,500	50,607,000	50,607,000	50,607,000	50,607,000	50,607,000	151,821,000
101	2303, 2302	1	1층	2	280,180,275	221,579,725	501,760,000	50,176,000	25,088,000	25,088,000	50,176,000	50,176,000	50,176,000	50,176,000	50,176,000	150,528,000
			2층	2	286,250,029	226,379,971	512,630,000	51,263,000	25,631,500	25,631,500	51,263,000	51,263,000	51,263,000	51,263,000	51,263,000	153,789,000
			3~4층	4	292,319,783	231,180,218	523,500,000	52,350,000	26,175,000	26,175,000	52,350,000	52,350,000	52,350,000	52,350,000	52,350,000	157,050,000
			5~7층	6	298,389,536	235,980,464	534,370,000	53,437,000	26,718,500	26,718,500	53,437,000	53,437,000	53,437,000	53,437,000	53,437,000	160,311,000
			8~14층	14	302,940,455	239,579,545	542,520,000	54,252,000	27,126,000	27,126,000	54,252,000	54,252,000	54,252,000	54,252,000	54,252,000	162,756,000
			15층이상	28	307,496,959	243,183,041	550,680,000	55,068,000	27,534,000	27,534,000	55,068,000	55,068,000	55,068,000	55,068,000	55,068,000	165,204,00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73.0250A	73.0750B	84.0380A	84.1050B	93.1820A	93.0610B	93.3620C	101.8190
약식표기	73A	73B	84A	84B	93A	93B	93C	101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하남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별도 유상옵션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주거공용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복도, 현관, 계단 등의 공동주택 내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 포함)은 지하층 및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경비실 등의 면적임.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 포함)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소수점 셋째자리표기로 인해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산은 없음.
-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계약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정산하기로하며, 이 경우 정산금에 대하여 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제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실행에 필요한 신용보증수수료,인지대 등은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대출 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임. 또한,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대출은 공급금액의 55%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기관추천(국가유공자 · 장애인 · 철거주택 소유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단, 철거주택 소유자인 경우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5.02.27.)적용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에 한함)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주택공급신청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함)인 자로서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 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7.16)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총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납입총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총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 3 제4항 관련)

구 분	하남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2015.02.27)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3 제4항 별표 1의2[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따라 해당구간의 금액이 있으면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함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 · 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 · 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 · 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다자녀 특별공급,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특별공급 유의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 · 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대 상 세 대								계
		73A	73B	84A	84B	93A	93B	93C	101	
기관추천 특별공급	철거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5	2	12	6	–	–	–	–	2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3	1	6	3	3	3	3	3	25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2	1	5	3	3	3	3	3	23
	소 계	5	2	11	6	6	6	6	6	48
신혼부부 특별공급	하남시거주자(30%)	2	1	3	2	–	–	–	–	8
	경기도거주자(20%)	1	–	2	1	–	–	–	–	4
	수도권거주자(50%)	3	1	6	3	–	–	–	–	13
	소 계	5	2	12	6	–	–	–	–	2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하남시거주자(30%)	1	1	1	1	1	1	1	1	8
	경기도거주자(20%)	–	–	1	1	1	1	–	–	4
	수도권거주자(50%)	–	–	2	–	–	–	–	–	2
	소 계	1	1	4	2	2	2	1	1	14
합 계		16	7	39	20	8	8	7	7	112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25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통장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 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박사학위 취득 영구 귀국자, 우수선수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대상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 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48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35(2013.12.27)]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미달시 타 시 · 도에 배정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배 점 표 (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수	해당 사항	비 고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7.16)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7.16)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와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7.16)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7.16) 현재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한한다)도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 기간(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7.16)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본다
		5년이상 ~ 10년미만	15		
		1년이상 ~ 5년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7.16)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25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 ※ 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734,603원 이하	5,224,645원 이하	5,560,026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681,524원 이하	6,269,574원 이하	6,672,031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560,026원) + {1인당 평균소득(412,712원) ＊ (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임.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①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②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 (하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 전체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대상 총 14세대)

■ 신청자격 및 요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5.07.16) 현재 하남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7.16)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3항에 의거하여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 배분.
-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함.(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 등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편리하게 청약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16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청약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APT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7.16)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하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4.07.16)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30%를 우선공급하며, 20%를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경기도에(2015.01.16)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함.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예 : 수원시 → 하남시)에는 합산이 가능하나, 경기도 외 타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으로 전입한 경우(예 : 수원시 → 인천광역시 → 하남시)에는 새로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하여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서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2014.07.16 이후 전입자) 중 경기도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경기도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가능하나,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자의 경우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2012.09.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1순위자 중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는 1순위 청약이 제한 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 분	하남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2015.02.27.)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3 제4항 별표 1의2[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따라 해당구간의 금액이 있으면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함

■ 순위별 신청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 청 자 격
민영주택	하남시 (하남시 1년 이상 거주) / 경기도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	1순위	공통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1) 가점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 2) 추첨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전용면적 85㎡이하	• 가점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총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납입총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전용면적 85㎡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총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납입총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2순위	전주택형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공 통

(1) 층별 · 동별 · 호별 ·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7.16) 현재 하남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당해지역 거주자"), 경기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경기도 거주자")와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전원 청약순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2) 청약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당해지역(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내에서 당해지역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수도권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차순위 공급세대 배분방식 및 공급순서 또한 선순위와 동일함)

(3) 당해지역 거주자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해당지역 계속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제한됨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제6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로 신청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자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3. 1순위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됨.
- 청약자는 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에 따라 접수되나 입주자저축 가입 요건이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한 세대에 속한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2순위로만 청약 가능함.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를 가점제로 적용하여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전용면적 85㎡초과 주택형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를 가점제로 적용 우선공급하고, 일반 공급대상 주택수의 50%는 추첨제로 공급하되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가점제 적용 세부 기준

구 분	내 용
일반기준	•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산정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 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 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 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4.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5.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 비 사 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2순위 : 청약통장 취급은행 비치) •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6.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 지점 창구 신청접수

주택형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택형	50만원	• 인터넷 청약시(08:00~17:30) : 인터넷 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전 계좌잔액을 50만원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 청약시(09:00~16:00) : 청약자 거래은행 본 · 지점에서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 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7.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 영업일(2015.07.31) 이후부터 평일(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구 분	환 불 장 소	비 고
인터넷 신청 시	은행에서 청약자 계좌로 송금	–
은행창구 접수 시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 · 지점 방문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본인확인증표(※ 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위임장

※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7.16) 현재 주민등록 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Ⅲ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국가유공자등)/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하남시 /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2015.07.22(수) 10:00~15: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 견본주택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35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15.07.23(목) 08:00~17:30	• 인터넷 신청	• 1순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2순위		2015.07.24(금) 08:00~17:30		• 2순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16개)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 지점 창구에서 가능)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이혼,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7.1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표1)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Ⅳ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절차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 · 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 일시 : 2015.07.22. (수) 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 일시 : 2015.07.30. (목) •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일시 : 2015.08.04(화)~06(목) 10:00~17:00 (3일간)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 일시 : 2015.07.30. (목)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게재 (http://www.thesharp.co.kr/salessite/misa)		
	2순위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특별공급 동 · 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 공급분과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 · 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당첨자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분양수입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확인 여부는 당첨자 발표 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이용기간		2015.07.30 ~ 2015.08.08 (10일간)	
인 터 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 조회
전화(ARS)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전자금융 공동망 1369 (서비스코드 : 5#)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주택청약 신청시 SMS 당첨통지 서비스에 동의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5.07.30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동점자 발생에 따른 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 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 · 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함.(단,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며 1순위 가점제 미달시 추첨제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대상으로 30%를 먼저 선정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20%를 선정하고, 기타 수도권 거주자 대상으로 50%를 선정함. •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는 경기도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경기도 청약자(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 포함) 중 낙첨자는 수도권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Ⅴ 계약 체결

■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구 비 서 류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 내역 필수)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계약금(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 대리계약 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인감도장(계약자 및 대리인 각각), 계약자 인감증명서[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 확인서 1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부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신혼부부	○		• 혼인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일반공급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	• 주민등록초본(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증명 서류 (계약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7.1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2005. 7.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하시기 바람.

※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일반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393337-04-004418	(주)하나자산신탁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계약자는 계약금(15%)을 완납 시, 분양금액의 55%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대출이자는 입주개시월의 이자정산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해 주며, 입주시 납부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이자후불제)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17년 1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 금액은 실입주 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및 기계/전기실

■ 주민공동시설 •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샤워탈의실(남/여), 문고, 독서실(남/여), 맘스카페

Ⅵ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확장(별도계약 품목)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 ㎡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73A	73B	84A	84B	93A	93B	93C	101
확장가격	12,770,000	10,143,000	12,810,000	10,807,000	14,475,000	13,364,000	14,958,000	17,729,000
확장면적	28.078	22.004	23.260	23.050	30.650	28.861	38.620	40.650

※ 상기 발코니확장비용은 발코니창호 비용, 침실 붙박이장 1개소(84A-침실1, 73A,73B,84B,93A,93B,93C,101-침실2) 및 추가 냉매배관(침실1, 침실2)이 포함된 금액임.

※ 상세한 발코니 확장 비용 납부일정 및 금액에 대해서는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서 상 명시 예정. ※ 타입별 발코니 확장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한 면적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

※ 타입별 확장 선택형 유형에 따라 평면이 상이하며, 확장 분양가 또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 발코니확장금액은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KB국민은행	577937-04-000405	(주)포스코건설

※ 유의사항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발코니 확장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 금액은 통합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통합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 가능기한 이후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업체의 부도, 납품 포기,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외부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됨.(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매립 배관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함.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발코니(일부)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창호(외부그릴, 전동사이즈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창호는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세대(비확장형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12.2.개정시행).
- 단위세대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유상옵션(별도계약 품목) : 납부계좌 및 납부조건은 별도 안내 예정임

-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73A	73B	84A	84B	93A	93B	93C	101
선택1	금액	3,335,000	3,161,000	3,483,000	3,512,000	3,955,000	3,911,000	3,896,000	3,807,000
	설치장소	거실+안방	거실+안방	거실+안방	거실+안방	거실+안방	거실+안방	거실+안방	거실+안방
선택2	금액	4,826,000	4,678,000	5,800,000	5,637,000	6,670,000	6,523,000	6,744,000	7,423,000
	설치장소	거실+안방+침실1+침실2	거실+안방+침실1+침실2	거실+안방+침실1+침실2	거실+안방+침실1+침실2	거실+안방+침실1+침실2	거실+안방+침실1+침실2	거실+안방+침실1+침실2	거실+안방+침실1+침실2+침실3

-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만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가능하고,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시스템에어컨은 설치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 에어콘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기존 냉매배관은 설치가 제외되며, 상기 시스템 에어콘 공급금액은 기존 냉매배관 설치비용을 차감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 거실+안방에 설치되는 매립 냉매배관을 이용하여 시스템 에어콘이 설치됨.
- 에어컨 개별 설치시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함.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바람.
- 에어컨 개별 설치시 실외기실의 공간이 협소하므로 별도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스템에어컨 금액 납부계좌
  - 시스템에어콘은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시스템 에어컨	KB국민은행	577937-04-000393	(주)포스코건설

※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제1항과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별도계약 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별도계약 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별도계약 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별도계약 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상기 유상옵션(별도계약 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별도계약 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업체의 부도, 납품 포기,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별도계약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상기 별도계약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유상옵션(별도계약 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자재 품목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 ·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 ·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	온돌마루, 현관바닥(타일, 석재), 현관 디딤판 및 굽도리,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욕실/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대피공간 타일	바닥난방,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 우수 선홈통, 수공간 바닥 방수(보호몰탈시공)
벽	초배지, 벽지 및 벽체마감 (아트월, 타일, 석재, 발코니 도장 등 포함)	경량벽체,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및 단열
천장	천장지,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대피공간 도장	거실, 침실, 현관 천정틀 위 석고보드(우물천장, 커튼박스 포함), 몰딩, 욕실천장
창호	창호(문틀, 문짝, 문선, 하드웨어 포함), 내부PVC창호, 디지털 도어락	외부창호, 가틀(세대내 목재도어부위), 실외기실도어/루버, 현관문, 소방관련 방화문
주방	주방 및 다용도실 가구(상판 및 악세서리 일체 포함), 가전류(쿡탑, 후드, 전기오븐, 식기세척기(93A,93B,93C,101타입만 해당) (주방TV 등), 주방수전, 절수패달, 벽타일 및 인조석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단부보호처리 등), 주방배기 덕트, 전기 · 통신 배관/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욕실	타일, 석재(세면대 뒷턱, 세면대 상판, 벽 등), 상/하부 욕실장, 샤워부스, 재료분리대, 위생기구(양변기, 욕조, 세면대), 수전류, 악세서리류, 비데(부부욕실),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천장(배기팬 포함), 방수(바닥, 벽), 바닥미장, 설비배관(급배수) 배기덕트
가구기타	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상판가공석 포함), 식당장, 복도수납장, 욕실수납장, 현관창고, 다용도실 가구, 시스템선반, 거울, 수전류(발코니 등), 전동빨래건조대	설비배관(에어컨 냉매배관), 거실 월패드
조명기구	매립 및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은 평형별 기본제공 품목에 한하여 해당됨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73A	73B	84A	84B	93A	93B	93C	101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금액	20,824,357	20,946,086	23,915,023	23,941,881	27,448,832	27,464,989	27,480,922	29,711,906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 미포함된 금액임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분양 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입주자는 사업주체가 정한 최초 입주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 이후 시공이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 이상)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 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사업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주방가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디지털 도어락은 설치되지 않으며, 디지털 도어락 개별 설치시 거실 월패드와 연동이 되지 않음.

Ⅶ 유의 사항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민영 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노부모 특별공급시 유주택자로 간주함)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 · 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 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07.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2]

- 사업주체는 동 법 제21조의2 제3항 및 제22조 제9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함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22조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22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같은 순위(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21조의2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큰 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 4.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산은 없음.
-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계약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정산하기로 하며, 이 경우 정산금에 대하여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음.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상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조개선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 인허가를 진행함) • 토목관로의 재질은 관로의 가격, 성능 및 현장여건에 따라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디자인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난간의 높이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가동에 따라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옥상지붕에는 경관용 옥상녹화가 설치되며 관리상 접근은 통제됩니다.
-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 상 단지 내 · 외부 도로(단지주변 및 도시계획도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의 창호 크기, 개폐방향 및 설치 위치, 프레임 및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여도 비난방, 비단열 공간이며, 별도의 천장마감이 없습니다.
- 일부 창호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관리형토지신탁계약 관련사항

- 미사강변도시 A23블럭(미사강변더샵센트럴포레)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탁자 일주건설 주식회사(위탁자 겸 수익자, 이하 같음), 신탁사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상 사업주체의 책임과 관련하여 신탁사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과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 일주건설 주식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일주건설(주)와 수탁자(매도인)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 · 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일주건설(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매도인)의 "을"에 대한 모든 권리 · 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일주건설(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됩니다.
- 분양대금은 본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토지비, 공사비, 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Ⅷ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관련 유의사항

※ 다음의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택지개발지구여건

- 하남미사지구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하남사업본부)로 문의바람. • 사업지구 남서측 약 3km 지점에 군부대 하남비행장이 있어 항공기(헬리콥터)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구 동측 미사리 경정경기장의 경정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구 내 열공급시설, 가스공급설비(가스공급시설, 긴급차단시설, 정압시설), 송전철탑, 오수중계펌프장, 배수지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사업지구 북측의 선동IC 주변에 특별고압송전철탑이 설치 및 운영예정이며, 지구내를 관통하는 송전철탑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향후 지중화할 계획이나 관계기관의 여건 및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입주후에도 완료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사업지구 북측으로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지구(SH공사) 조성공사가 진행예정임.
- 하남선(상일~검단산) 2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현재 설계 중으로 노선확정에 따른 공사진행시 공사차량의 이동 등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며, 향후 전철 운영 및 시설물(환기구 등) 설치에 따른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 등에 따라 공동주택지 경계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및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에는 공공공지, 연결녹지의 계획에 따라 전면조망 및 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으로서,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시 · 발굴조사 및 보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 · 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 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위 사항으로 인해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연기 될 수 있음. 또한 입주시에 택지지구 내 타단지 아파트 공사 및 기반시설공사로 인한 분진, 먼지, 소음 및 공사자재 수송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미사강변도시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공급필지세부내역 공사계획평면도 건축물 등에 관한 도면 지구단위계획승인내용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등은 한국토지 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구단위계획승인 지구단위 계획시행 지침포함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에 직접 내방하여 확인하시거나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확인할 수 있음. 게시된 도면의 기준점 등은 현황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승인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 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사항 각종 영향평가 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포함, 최고고도지구지정에 따른 제약사항 에너지사용계획 건축 · 주차장 · 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 ·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 · 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 · 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대지면적에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계단, 일부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접지역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람.
- 미사강변도시지구단위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은 사업부지 이외의 구간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계약시 숙지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미사강변도시내 및 인근의 신설 · 확장도로는 인 · 허가 추진 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미사강변도시내 교량 지하차도 종교시설 주유소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 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등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시설물들의 위치는 향후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기반시설, 근린공원, 광장 등의 개발계획은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에 의한 것으로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 연기 ·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하고 그 진행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음.
- 미사강변도시 내 · 외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집단에너지시설 하남시 풍산동 일원("열"블럭 면적 : 39,916㎡, 설비용량 : 열251.3Gcal/h 전력 398.9MW]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될 계획임에 따라 계약인은 제반사항을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열공급용량 등 세부계획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구외시설 :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공영차고지, 서울공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 지구내시설 : 열병합발전소, 가스정압시설, 가스충전소, 저류지, 하천, 수도시설, 주유소, 학교 등
- 본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미사강변도시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사업지주변의 계획레벨도로 공공청사, 복지시설, 초등학교 등 변경에 따라 단지레벨 및 옹벽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외부의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인하여 본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여 도로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과 현장여건에 맞게 일부 조정되어 설계변경될 수 있고 단지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미사강변도시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발생지역으로 본아파트는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며 군작전상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시어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당첨자, 입주예정자는 추후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당첨자 또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단지주변에는 근린상업시설 및 공공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지구대, 우체국이 있으며 향후 근린상업시설 및 공공시설이 들어설 경우 향후 일부세대의 경우는 사생활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유의사항

- 당 사업부지 북측에는 소공원 및 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으며, 동측에는 경관녹지가 계획되어 있음.
- 당 사업부지 북측에는 신설 초등학교예정으로 향후 신설 초등학교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등)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및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 사업부지 남동측 약 100m 위치에 주유소 부지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 확인 바람.
- 단지 주변에는 공공공지, 연결녹지 등의 계획에 따라 전면조망 및 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사업부지와 인접한 소공원, 경관녹지 및 보행자도로 등의 조성공사는 해당 시행기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 CG 등 분양 카다로그 내용과 다르게 조정될 수 있음.
- 당 사업지 인근 미사초 및 미사중에 초중학생을 수용할 예정이나 이는 향후 지구계획 승인시 계획한 학교부지의 조성 공급 학교시설의 설치 진행 경과 및 관할 관청의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 사업지가 속해 있는 미사강변 택지개발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08-27호) 하남 에너지서비스 (주)가 집단에너지 공급에 대한 사업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중임.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위치	면적(㎡)	설비용량	
		열	전력
하남미사 개발 사업지구	5,462,689	427Gcal/h	398.MW

■ 홍보물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주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카달로그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람.

■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타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모델하우스 건립타입(84A, 93B, 101)외 모델하우스 미건립타입(73A, 73B, 84B, 93A, 93C)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모델하우스 건립평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미건립 타입의 마감재 사양 및 공간은 견본주택 내 별도로 비치된 모형을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주민공동시설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음.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분양가 미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은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공사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스프링클러, 환기구(급/배기용),소방 감지기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됨(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 및 천연자재(천연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납품포기, 자재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바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시공되지 않음.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욕실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비확장형 선택 시 확장형 선택 시와 기본제공품목 및 공간별 선택사항이 상이하거나 제한 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람. • 상부 세대 비확장 시, 하부세대의 천정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정 깊이, 등박스의 크기 등의 천정부분이 변경(위치, 깊이, 형태 등)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에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전열교환기는 세대 환기를 위해 설치된 장비로 동절기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장비 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전열교환기를 가동시켜 환기해 주시기 바람.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 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세대내 무선AP가 설치되며, 인터넷 회선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월패드, 주방TV 등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함.
- 전 평형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세대 내 다용도실과 발코니 수전 및 드레인 위치는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천정고는 거실기준 기준층 2.3m 이며, 실외기,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은 상이할 수 있음. • 실외기실 상부에는 주방 배기를 위한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음.
-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시스템이 발코니 천정내부에 설치되는 경우 일부 천정이 낮아질 수 있으며,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환기시스템 가동에 따라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비확장 발코니에 도시가스 배관 및 미터기가 설치되며,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특정세대 내에 가스 정압기(감압기) 또는 신축 엘보가 설치될 수 있음.
- 일부 유니트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팬분리형 주방후드의 설치로 인해 주방 천정에 팬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팬 가동시 천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운전 소음이 실내로 전달될 수 있음.
- 에어컨 개별 설치시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함.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바람. • 에어컨 개별 설치시 실외기실의 공간이 협소하므로 별도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람.
- 일부 평형에 한해 욕실 슬라브 단차 시공으로 발코니 상부 슬라브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Ⅸ 단지 내부 여건 및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의 단지 내부여건사항 및 단위세대 설계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홍보물 및 카탈로그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 내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분양 카다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문고) 및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실 시공시 위치, 다른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재질,간판형태 등)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옥외운동시설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소음 및 시선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계획은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전기 및 통신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외부 일부 도시가스 배관 위치는 KEPCO(구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상가동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DA(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탑라이트, 상가 및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DA(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과 인접한 동은 일부 소음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 사업부지 서측은 20m 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동측은 경관녹지 및 30m도로, 북측은 소공원 및 보행자도로, 남측은 경관녹지 및 20m 도로에 인접해 있음.
- 당 사업부지 북측 및 동측에 접한 소공원, 보행자도로, 경관녹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관련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주출입구 부근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설비등 시설물로 인해 소음 및 시선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전 · 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하남 미사지구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민텃밭은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함.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을 엘리베이터를 사용 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2303동, 2304동은 어린이 물놀이장 및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하여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2301동과 2302동 사이, 2304동과 2305동 사이에 어린이 놀이터가 계획되어있어 이로인한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2303동, 2034동, 2305동은 주민운동시설과 인접하여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2304동은 단지주출입구의 회차공간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하여 차량 조명에 의한 눈부심,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2303동 1호라인 세대와 2302동 3호라인 세대는 동간거리가 인접하여 시선간섭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2301동 북측, 2302동 북측, 2303동 북측, 2304동 북측, 2305동 북측, 근생시설 동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시선간섭, 냄새,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2303동 북측, 2304동 북측, 2305동 북측에 천창이 계획되어 있어 시선간섭 및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2301동 동측, 2302동 서측 및 남측, 2304동 남측, 2305동 북측, 단지주출입구, 근생시설 북측에 DA(급배기구)가 계획되어 시선간섭 및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료,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APT)용이며, 근린생활시설 앞 지상주차장 총5대(장애인: 1대, 일반: 4대) 및 하역공간은 근린생활시설용임.
- 해당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 · 감독에 따라야 함.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연면적 기준에 의해 정리되었으며,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실시 계획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실외기실 창호 및 대피공간 창호는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하남시의 인허가 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 및 주민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대지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하기 마감수준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세부 계획 시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저층부(1~3층) 외벽마감은 디자인 계획에 따라 석재뿜칠, 도장 등 및 석재가 혼용 적용될 수 있음(필로티 포함).
- 주동 e/v홀 마감의 1층 및 지하층 바닥마감은 천연석, 벽마감은 타일 및 도장 혼용시공, 기준층 바닥마감은 타일, 벽 마감 및 천정마감은 도장으로 시공되며, 동등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에는 냉매배관 2개소(거실+안방)가 기본 설치됨.
- 단지 배치상 기계 전기실 및 주차장 급배기구,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해 생활환경이 불편할 수 있음.
- 무인택배 보관소는 단지내 집합형으로 설치됨, 위치는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비확장 발코니 천정에는 주방 배기를 위한 덕트가 노출시공될 예정임. • 일부 세대의 경우 발코니에 도시가스 배관 및 미터기가 설치될 수 있음.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③항에 해당되지 않는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 · 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 · 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 · 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 · 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친환경 주택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8조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의무사항 이행여부)

고기밀 창호	고효율 기자재	대기전력 차단장치	일괄소등 스위치	고효율 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절수 설비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주택성능등급인정

- 본 아파트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발급 받았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았음.
- 인정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인정일자 : 2015년 7월 6일 / 인정번호 : 2015-05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14의4.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규정

–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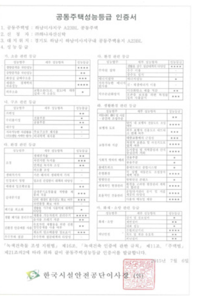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 · 정보통신 감리
회사명	(주)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주)삼진탑테크엔지니어링	(주)단에이엔씨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1,470,370,000	361,459,174	101,20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 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항 목	공 종	금 액 (원)	비 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96,083,613,250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5,955,288,961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그 밖의 비용	8,525,671,781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계		110,564,573,991	
공사비	토목	3,384,680,835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건축	41,741,498,059	공통가설공사, 가시설공사 등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5,924,606,732	급수설비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그 밖의 공종	12,823,622,181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그 밖의 공사비	7,097,156,693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		70,971,564,500	
간접비	설계비	635,816,100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감리비	1,933,029,174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부대비	30,892,733,982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도 · 가스 · 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계		33,461,579,256	
그 밖의 비용		15,898,482,254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합 계		**230,896,200,000**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92015-101-0008500	163,764,419,700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사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얻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한다)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자
상 호	(주)하나자산신탁	(주)포스코건설	일주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74611-0002979	120111-0090960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thesharp.co.kr/salessite/misa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 78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 모델하우스 (덕풍동 735번지)

■ 분양문의 : 1833-7723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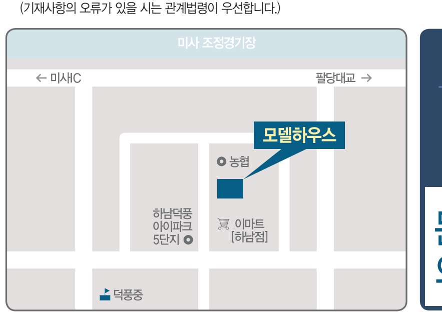

73㎡/84㎡/93㎡/101㎡

총 487세대

문의 1833-7723